

2023년도 제2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29.(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민아(분과위원장), 김성주, 김정숙, 손수호 E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9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숙형 부장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88건(안건번호 제2023-243537호~2443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43537호는 ☆☆☆ 블로그에 음악을 게시하면서 게시자의 생각 등을 같이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538호~243558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559호~243574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43575호~243583호는 웹하드, 블로그 및 카페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9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민아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김성주, 손수호,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의결을 하고 있는가?

- 이숙형 부장: 그러함. 다만 다음 카페의 경우 카카오 뮤직 사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분과도 있음.
- C 위원: 시정권고가 나가면 게시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 이숙형 부장: OSP에서 게시자한테 메일로 전달하고 있음.
- D 위원: 음악을 게시하면서 본인의 생각 등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 정도면 경고이고 생각, 의견 등이 아주 적으면 가결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많고 부분 인용으로 보면 부결이 되는 것인가?
- 이숙형 부장: 그러함. 그런데 자신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불가피하게 그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도 있음.
- C 위원: 전체 분량의 어느 정도 까지 허용이 되는가?
- 이숙형 부장: 분량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없고, 안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안건에 대해 경고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걸 알려주는 정도의 취지 즉 보호하는 역할을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E 위원: 게시자가 올린 다른 글을 보면 유튜브 링크만 있는 게시물들이 있음.
- 이숙형 부장: 유튜브 링크만 있는 글은 저희가 부결로 하고 있음. 단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유튜브 링크를 한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다운 받아서 올린 것으로 보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43537호에 대해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537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538호~24355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243538호~24355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538호~24355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3559호~24357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비슷한 사업자가 계속 게시물을 올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가?
- 이숙형 부장: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음.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3-243559호~243574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243559호~2435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575호~243583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 ☆☆☆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아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243575호~243583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43575호~2435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243584호~24432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일반영상, 기타, 방송, 만화/웹툰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우당탕탕 패밀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189호 (‘우당탕탕 패밀리’)는 2023.09.18.부터 방영중인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00포인트에 판매중임.

(‘힘쎈여자 강남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226호 (‘힘쎈여자 강남순’)는 2023.10.07. ~ 11.26. 방영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130포인트에 판매중임.

(‘낮에 뜨는 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244281호(‘낮에 뜨는 달’)는 2023.10.20. 공개한 한국 드라마로 웹하드에서 260포인트에 배포중임.

- 김민아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3-243584호~24432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민아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3-243584호~24432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인건번호 제2023-243537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인건번호 제2023-243538호~243558호, 제 2023-243559호~243574호, 제2023-243575호~243583호는 가결하고 인건번호 제2023-243584호~2443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민아 분과위원장이 제2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9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2. 5.

분과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손수호

위원 한승원